KB나라사랑대출(주택자금)

상품특징

• 국가보훈부와 협약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전용 상품

대출신청자격

• 무주택자로서 국가보훈부로부터 전자문서로 대출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장기복무 (1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고객

대출종류	대출신청대상
주택구입자금	-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 예정이거나 구입한 고객
주택신축자금	- 본인명의 대지에 본인명의 주택을 신축하는 고객
아파트분양자금	- 본인명의 아파트 최초 분양 받은 고객
주택전세자금	- 본인명의로 임대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대출금액

• 대출금액은 국가보훈부 추천금액과 대출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 단, 지역별/차주별 대출한도가 차등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대출종류	추천금액	대출가능금액	대출신청시기
주택구입/신축자 금	- 대도시 : 6천만원- 중 소도시 : 4천만원- 농어 촌 : 3천만원	- 담보조사가격에 의 한대출 가능금액	- 계약서상 잔금 납부전까지또 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로부터 3개월 이내
아파트분양자금	- 대도시 : 6천만원- 중 소도시 : 4천만원- 농어 촌 : 3천만원	- 분양계약서상 분양 금액	-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납입일 이전 까지
주택전세자금	- 대도시 : 5천2백만원- 중소도시 : 3천3백만원- 농어촌 : 2천만원	- 임차보증금 100% 범위내	- 신규임차 : 입주일과 주민등 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갱신 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은 대출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대출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한다.

대출대상주택

대출종류	대상주택
주택구입/신축자 금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주택으로 종류, 구조 및 면적은 제한 없음(단,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이어야함)
주택전세자금	- 공부상 주택 및 준주택 중 주거용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아파트분양자금	- 분양(건설) 세대수 20세대 이상 주택

금리 및 이율리스트 펼치기

대출금리

 대출금리(확정금리)· 국가유공자 : 연3.0%* 국가유공자 중 2013.06.01 이전 주택구 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또는 2014.01.02 이전 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 우 연3.0% 적용* 국가유공자 중 2013.06.02부터 2020.08.03이전 주택구입/신축/아 파트분양/주택전세 또는 2014.01.03부터 2020.08.03이전 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 분의 경우 연2.0% 적용* 국가유공자 중 2020.08.04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 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5% 적용* 국가유공자 중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자금 대출신규 분의 경우 1.3% 적용* 국가유공자 중 2022.01.01 부터 2022.12.31 이전 주택구입/신 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4% 적용* 국가유공자 중 2023.01.01.부터 2023.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 규분의 경우 연2.4% 적용· 제대군인 : **연3.5%** ※ 제대군인 중 2013.12.31 이전 대출신 규분의 경우 연4.0%적용* 제대군인중 2014.01.01 부터 2020.09.24 이전 주택구입/ 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제대군 인 중 2020.09.25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 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제대군인 중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 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자금 대출신규분의 경우 1.8% 적용* 제대군인 중 2022.01.01 부터 2022.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 분의 경우 연1.9% 적용* 제대군인 중 2023.01.01.부터 2023.12.31. 이전 주택구입/신 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2.9% 적용 별도 우대금리 없음

조기상환수수료

• 면제

원리금납부

• 대출원리금 납부일은 국가유공자 매월 15일, 제대군인 매월 25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무보증신용으로 취급되는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군인연금 수령계좌를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해당 계좌의 대출이자율 + 연 3.0%p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답입 기일에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최종 이자수입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이용조건리스트 펼치기

담보

- 주택구입(신축)자금은 해당 주택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 아파트분양자금대출은 국가보훈부의 추천 방법에 따라 무보증신용 "후취담보(소유권이전 후 담보 취득)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회초분양이 아닌 아파트분양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상 "잔금"으로 신청가능
 당행에서 집단중도금대출 취급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회차별 중도금" 납입을 위한 대출 신청 가능하며 집단중도금대출 취급 승인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 상의 "잔금"부분을 소요자금으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만 취급 가능함
- KB나라사랑대출 구입/신축/아파트분양자금을 받고 주택을 취득하시는 고객님은 취득 세 면제(또는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국가보훈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세자금은 국가보훈부의 추천 방법에 따라 무보증신용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담보로 추천된 주택전세자금에 한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며, 당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신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자금보증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며, 대출이용 중 보증료는 1년 단위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대출이자 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이용 가능).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국가보훈부의 추천 방법이 무보증신용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추천된 경우라 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은행 부담(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시 은행부담) ② 담보취득관련(근저당권 설정시) 근저당권설 정비용(국민주택채권 할인매입비 포함) 은 은행 부담으로 처리하며, 국민주택채권매입 비는 면제됨(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 무사비용 : 은행 부담③ 모기지신용보증료(담보대출의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보증요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요율은 변동될 수 있음(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④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수수료("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신청시) : 고객 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라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기준 보증료율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증료우대 (0.1%p) 및 협약에 의한 보증료 우대(0.1%p) 적용(단, 제대군인은 협약에 의한 보증료우대(0.1%p)만 적용)(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 (3만원)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이용 중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 : 고객 부담전세자금보증 수수료 : 고객부 담(1년 단위로 납부 가능)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근저당권말소비용 : 은행 부담

대출상환 관련 안내

-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일시상환대출: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3)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5) 혼합상환: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6) 통장자동대출: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합산합니다.
- 휴일 대출 상환

기한연장 관련 안내

• 해당없음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및 기타리스트 펼치기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7.01~ 2026.05.31

기타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대출기간, 상환방법, 금리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 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3067-2호(2024.06.28)]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적용여부
주택구입(신축)/아 파트분양자금 대 출한도 변경 (2024.7.1)	∘ 대출 추천 최고한도 ○주 택구입(신축)자금, 아파트분 양자금- 대도시: 80백만원- 중소도시: 55백만원- 농어 촌: 40백만원	 대출 추천 최고한도○주택 구입(신축)자금, 아파트분양 자금- 대도시: 60백만원- 중 소도시: 40백만원- 농어촌: 30백만원 	미적용
신규 대출금리 인 상(2024.1.1)	○ 대출금리(확정금리)· 국가 유공자 : 연2.4%* 국가유 공자 중 2013.06.0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 주택전세 또는 2014.01.02 이전 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 용* 국가유공자 중 2013.06.02부터 2020.08.03이전 주택구 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 세 또는 2014.01.03부터 2020.08.03이전 아파트임 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적용* 국가유공자 중 2020.08.04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입/ 신축/아파트 분양/주택전세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1.5% 적용* 국가유공자 중 2021.01.01 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입/ 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 대출금리(확정금리)・국가 유공자: 연3.0%* 국가유공 자 중 2013.06.01 이전 주택 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 세 또는 2014.01.02 이전 아 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국가유 공자 중 2013.06.02부터 2020.08.03이전 주택구입/ 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 또 는 2014.01.03부터 2020.08.03이전 아파트임 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2.0% 적용* 국가유공자 중 2020.08.04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입/ 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 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1.5% 적용* 국가유공자 중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 양(전환)/전세 자금 대출 신규 분의 경우 1.3% 적용* 국가	미적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적용여부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1.3% 적용* 국가유공자 중 2022.01.01 부터 2022.12.31 이전 주택구입/ 신축/아파트 분양/주택전세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1.4% 적용· 제대군인 : 연 2.9%* 제대군인 중 2013.12.31 이전 대출신규분의 경우 연4.0%적용* 제대군인중 2014.01.01 부터 2020.09.24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제대군인 중 2020.09.25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2.0% 적용* 제대군인중 2021.01.1 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8% 적용* 제대군인중 2022.01.1 부터 2022.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1.8% 적용* 제대군인중 2022.01.1 부터	유공자 중 2022.01.01 부터 2022.12.31 이전 주택구입/ 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 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1.4% 적용* 국가유공자 중 2023.01.01.부터 2023.12.31. 이전 주택구입/ 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2.4% 적용* 제대군인 중 2013.12.31 이전 대출신규분의 경우 연4.0%적용* 제대군인중 2014.01.01 부터 2020.09.24 이전 주택구입/ 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아파트임대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3.0% 적용* 제대군인중 2020.09.25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입/ 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2.0% 적용* 제대군인중 2020.09.25 부터 2020.12.31 이전 주택구입/ 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2.0% 적용* 제대군인중 2021.01.01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2.0% 적용* 제대군인중 2021.01.1부터 2021.12.31 이전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1.9% 적용* 제대군인중 2023.01.1부터 2023.12.31. 이전 주택구입/ 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1.9% 적용* 제대군인중 2023.01.01.부터 2023.12.31. 이전 주택구입/ 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1.9% 적용* 제대군인중 2023.01.01.부터 2023.12.31. 이전 주택구입/ 신축/아파트분양/주택전세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2.9% 적용	
제대군인 대상 대 출한도 변경 (2022.1.1)	 대출 추천 최고한도○주 택구입(신축)자금, 아파트분 양자금- 대도시: 60백만원- 중소도시: 40백만원- 농어 촌: 30백만원○주택전세자 	 애출 추천 최고한도○주택 구입(신축)자금, 아파트분양 자금- 대도시: 80백만원- 중 소도시: 55백만원- 농어촌: 40백만원○주택전세자금- 대 	미적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기존고객적용여부
	금- 대도시: 40백만원- 중 소도시: 25백만원- 농어촌: 15백만원	도시: 52백만원- 중소도시: 33백만원- 농어촌: 20백만원	

필요서류

- 공통서류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국가유공자증 또는 퇴역연금증서 : 필요시
- 자금종류별 확인서류

자금종류	확인서류
주택구입자금	-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도 가능) 등
주택신축자금	- 건축허가(신고)서, 설계도면 등
아파트분양자금	-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영수증, 분양대금납부확인서, 입주자모 집 공고문, 건축허가서, 준공확인서류(잔금대출 신청시) 등
주택전세자금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 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인 통장사본(필요시) 등

• 담보설정시 추가서류 :①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 개월이내 발급분)②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③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④ 기타 필요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등